

● 제290회 ●
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
제5차 보건복지위원회

**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**
(의안번호 1129)

2019 11. 25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서울특별시장 제출 】

의안번호 1129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출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제 안 일 : 2019. 10. 16.
- 다. 회 부 일 : 2019. 10. 16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들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절실한바,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강화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가.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지원사업에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신설함
 - (1) 지급대상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 이하인 사람으로 하고,(안 제3조제1항제5호)
 - (2) 수당은 월 20만원씩 지급하도록 함 (안 제3조제1항제5호)

나.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(1)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

(2)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
(2) 입법예고(2019. 8. 16. ~ 9. 5.) 결과: 의견 없음

(3) 비용추계서: 별도 첨부

Ⅱ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이문성)

1 개정안의 취지

- 본 개정안은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확대를 위하여 제안되었음.
- 주요 내용으로는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가운데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월 20만원씩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하도록 제안하는 것임.

2 주요사항 검토

- 지급대상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보상을 받지 아니하는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이면서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인 사람, 두 가지를 다 충족시키는 사람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
 - 현재 서울시 거주 독립유공자 자녀 또는 손자녀 중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대상은 3,300가구로 추정됨

○ 또한, 개정안을 통해 대상자에게 20만원의 생활수당지급을 지급하는 것이 목적임.

- 현재 국가보훈처의 생활지원금은 3인 가구 기준 월 335천원으로,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국민가구소득의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,196천원에 비해서도 564천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..
- 기준 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독립유공수당을 지원해 이들의 소득을 최대 중위소득의 85% 수준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.

※ '19년도 사업별 기준 중위소득

(단위 : 원)

기준 중위소득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비고
100%	1,707,008	2,906,528	3,760,032	4,613,536	5,467,040	6,320,544	
85%	1,450,957	2,470,549	3,196,027	3,921,506	4,646,984	5,372,462	서울형 긴급복지
80%	1,365,606	2,325,222	3,008,026	3,690,829	4,373,632	5,056,435	청년·꿈나래통장 희망은돌기금
75%	1,280,256	2,179,896	2,820,024	3,460,152	4,100,280	4,740,408	국가긴급복지
70%	1,194,906	2,034,570	2,632,022	3,229,475	3,826,928	4,424,381	
60%	1,024,205	1,743,917	2,256,019	2,768,122	3,280,224	3,792,326	
50%	853,504	1,453,264	1,880,016	2,306,768	2,733,520	3,160,272	교육급여 차상위
44%	751,084	1,278,872	1,654,414	2,029,956	2,405,498	2,781,039	주거급여 서울형기초
40%	682,803	1,162,611	1,504,013	1,845,414	2,186,816	2,528,218	의료급여
30%	512,102	871,958	1,128,010	1,384,061	1,640,112	1,896,163	생계급여

※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

3 종합 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국가가 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, 국가를 위한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이 국가의 존립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가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음.
- 본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가운데서도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준 중위소득이 70%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, 개정안의 대상자들은 기존의 지원금에 생활지원수당을 받는다해도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, 이러한 측면에서 독립유공자 유족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한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음.

참 고 1

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주요지원 현황

대상별		보상금		
본인	건국훈장	1~3등급	8,039	
		4등급	4,962	
		5등급	4,131	
	건국포장		3,299	
	대통령표창		2,707	
유족	건국훈장	1~3등급	배우자	2,531
			기타유족	2,191
		4등급	배우자	1,865
			기타유족	1,826
		5등급	배우자	1,518
			기타유족	1,483
	건국포장		배우자	1,066
			기타유족	1,059
	대통령 표창		배우자	721
			기타유족	708

생활조정수당 (*생활수준고려, 신청시)
* 생활등급 10등급 이하 자

가족 3인이하 : 210~270, 4인 이상: 260~320

생활지원금 (순애기금, *생활수준 고려, 신청시)

독립유공자 (손)자녀 보상금 비대상자 중
·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, 생활조정수당 대상자 486천원
· 기준 중위소득 70%이하 335천원

독립유공자에우법		애국지사	순국·애국지사 유족
교육		[대상] 본인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[지원내용] 중·고·대 수업료 등 면제 및 학습보조금 지급 · 「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」 또는 「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」 학교 제출 · (손)자녀는 직전 학기 성적이 만점의 70% 이상일 경우 대학수업료 면제 · 대학 학습보조비는 본인, 배우자에 한하여 지급	
취업		[대상] 본인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 ※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 또는 장애나 고령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, 그 자녀 중 1인 [지원내용] 가점취업(만점의 10% 또는 5%), 보훈특별고용, 일반직공무원(과거 기능직공무원)등 특별채용, 취업수강료, 직업교육훈련 * 보훈특별고용 및 일반직공무원등 특별채용 : 자녀·손자녀 3인에 한함 * 보훈특별고용 : 자녀·손자녀의 경우 만 35세까지 신청 가능	
의료	본인	국비 진료	보훈병원 60% 감면
	유가족	보훈병원 60%감면	보훈병원 60% 감면

참 고 2

시도별 독립유공자 지원현황

시도	지원조례	지원사항			애국지사 (선순위자)
		보훈수당	위문금	의료비	
서울	독립유공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 ·금액: 월 20만원	·대상: 본인, 유족전체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10 (1,979)
부산	독립유공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 ·금액: 월 20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5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1 (482)
대구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(본인)100만원 (유족) 5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100만원	2 (403)
인천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월 3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1 (344)
광주	독립유공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(본인)10만원 (유족) 2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2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4 (186)
대전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-	·금액: 10만원(연2회) ·대상: 본인, 유족전체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1 (204)
울산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-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5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- (67)
세종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(본인)10만원 (유족) 5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2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30만원	- (31)
경기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 ·금액: 월 100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200만원	8 (1,920)
강원	국가보훈대상자 예우 조례	-	-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100만원	- (178)
충북	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조례	-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3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60만 원	1 (192)
충남	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조례	-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20만원(연3회)	-	1 (354)
전북	독립유공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 ·금액: 월 10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1 (238)
전남	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조례	-	-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30만 원	1 (181)
경북	독립유공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 ·금액: 월 10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1 (500)
경남	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조례	-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0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전액	- (317)
제주	국가보훈대 상자 예우 조례	·대상: 본인, 선순위 자 ·금액: 월 6만원	·대상: 본인, 선순위자 ·금액: 15만원(연2회)	·대상: 본인, 유족 ·금액: 본인부담금 연30만 원	3 (85)